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. 5. 26 선고 2019가단22470(본소), 2020가단2106(반소) 판결
[지상물 철거 등 청구의 소 · 소유권이전등기]

전 문

반 소 원 고 A

반 소 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해송

담당변호사 배교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기준, 송선아

변 론 종 결 2021. 4. 28.

판 결 선 고 2021. 5. 26.

주 문

1.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영주시 C 과수원 979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, 18, 16, 15의 각 점을
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(ㄴ) 부분 7㎡에 관하여 2007. 6. 20. 취득시효완성
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반소피고는 1974. 12. 21. 영주시 C 과수원 979㎡에 관하여 '1974. 10. 7. 매매'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반소원고는 1987. 6. 19. 영주시 D 창고용지 1064㎡에 관하여 '1987. 6. 18. 매매'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반소원고 주장의 요지

영주시 C 과수원 979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, 18, 16,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(ㄴ) 부분 7㎡(이하 '이 사건 계쟁 토지'라 한다)는 피고가 1987. 6. 19. 피고 소유인 영주시 D 창고용지 1064㎡를 취득할 때부터 현재까지 평온 · 공연하게 자주점유하고 있으므로,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3. 판단

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하는데(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다5581 판결,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다37428 판결 등 참조), 위 인정사실,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철조망을 두른 가시나무가 심겨져 있다가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는데, 가시나무가 존재하던 때의 사진 등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, ② 시멘트포장 또는 아스콘포장으로 이 사건 계쟁 토지가 반소원고의 점유에 속한다는

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소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반소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민규

별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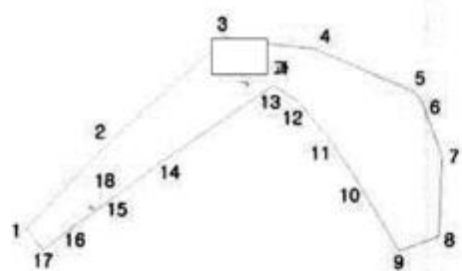
감 정 도

사건번호 : 2019가단22470 지상물 출거 통

토지 소재	경상북도 영주시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범 례	영 령 지상권 지물권 (지상권 설정권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자 번	부 호	영 령	면적(㎡)	비 고
	ㄱ	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8, 16, 17, 1	872	그 외 부분
	ㄴ	15, 18, 16, 15	7	필고가 주장하는 부분 (아스콘포장)
비 고	이 감정도는 축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			

1)본소는 2021. 3. 10. 청구인낙, 소취하로 종결되었다.